

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686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01년 9월 18일

제안자 : 산업건설위원회

위원장 류한철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 내용중 문맥상 어순에 맞지 않는 "주민의견의 청취를 위한 도시계획 입안시 도시기반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인 경우에는" 라 표기된 문구 변경과 "LPG 충전소"의 문구를 법률용어인 "액화 가스 충전소"로 하고
- 최근 우리시에서 대규모 체육행사등이 수시로 개최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고 또한 유예기간 없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의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업지역 안에서의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는 규정을 1년간 유예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"도시계획 입안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인 경우에는 주민의견의 청취를 위해 대상토지의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" 로 문구를 수정함. (안 제9조 제2항)
- 제51조의2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(안 부칙)
- "LPG 충전소"를 법률용어인 "액화석유가스 충전소" 로 수정함.
(안 별표16 제2호 마목)

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 제2항을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입안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인 경우에는 주민의견의 청취를 위해 대상토지의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” 로 한다.

안 부칙을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1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안 별표16 제2호 마목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제외한다)

수 정 안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9조(도시계획입안시 주민의 건청취) ①법제22조 및 영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시 주민의견을 청취 할 때에는 도시계획입안에 포함되는 당해 필지내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일간신문 등이 공고 또는 공람기간 동안 시흥페이지의 게재로 대신한다.	제9조(도시계획입안시 주민의 건청취) ①법제2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입안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, 도시계획입안의 내용을 공고 또는 공람기간 동안 읍·면·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시흥페이지를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.	제9조(도시계획입안시 주민의 건청취) ① (개정안과 같음)
②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의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시에는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에의 공고방법외에 시청 및 읍·면·동사무소의 게시판 및 공람기간 동안 시흥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계획입안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	②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의 청취를 위한 도시계획입안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인 경우에는 대상토지의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입안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인 경우에는 주민의견의 청취를 위해 대상 토지의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	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1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【별표 16】 (3) (생략) 다. ~ 라. (생략) 마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	【별표 16】 (3) (현행과 같음) 다. ~ 라. (현행과 같음) 마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LPG충전소는 제외한다)	【별표 16】 (3) (현행과 같음) 다. ~ 라. (현행과 같음) 마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제외한다)